

Forfaiting 거래 기본약정서(국문) 공시사항

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12.11.12	2016.02.25	판매중	적용

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제2조 매수대금 및 지급 (1) 매수대금은 화환어음의 액면금액에 매수인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	제2조 매수대금 및 지급 (1) 매수대금은 화환어음의 액면금액에 <u>당사자들이 합의한 할인율</u> 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.	
2	제6조 소구의무와 함께 이행할 기타의무 (2) 제5조의 경우 매도인은 제1항의 환매대금에 대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제5조의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 소정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.	제6조 소구의무와 함께 이행할 기타의무 (2) 제5조의 경우 매도인은 제1항의 환매대금에 대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제5조의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<u>당사자들이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기타 서면의 방법으로 합의한*</u>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. (* 주 :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신거래 약정서나 기타 서면의 방법으로 미리 연체이자율을 합의해 놓아야 합니다.)	

3. 담당부서명 : 기업금융부

(붙임 2-1)

Forfaiting 거래 기본약정서

매수인(Forfaitor):

매도인(Seller):

인감대조

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.	
---	--

매도인은 매도인이 수익자로서 수취한 신용장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, 아래의 조건을 적용하기로 정히 합의한다.

아 래

제 1 조 (매수대상 화환어음)

- (1) 매도인은 매수인 소정의 Forfating 신청서 양식에 관련 신용장 및 부대서류의 내역을 명기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함으로써 화환어음의 매수를 의뢰한다.
- (2) 매수인은 관련 신용장, 화환어음, 부대서류 등을 심사하여, 매도인이 요청한 화환어음의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. 매수인은 화환어음의 만기지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화환어음의 매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.

제 2 조 (매수대금 및 지급)

- (1) 매수대금은 화환어음의 액면금액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(2) 매수대금은 달리 지시가 없는 한 매도인 또는 그 직원임을 칭하고 화환어음을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이로써 매수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본다.

제 3 조 (화환어음의 진정성, 완정성 등)

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진술하며 보장한다.

- (1) 매도인이 제출한 신용장은 유효하고 모든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.

- (2) 매도인이 제출한 화환어음 및 모든 부대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한다.
- (3) (인수 후 화환어음의 매수를 의뢰하는 경우) 화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화환어음에 대한 인수는 진정하고 유효하다.
- (4) 매도인은 화환어음 및 신용장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 (배서를 포함한다.) 및 절차를 완료한다.
- (5) 매수인에게 매수를 요청한 신용장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화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여하한 법률상, 사실상의 장애가 없다.
- (6)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화환어음의 매수를 신청한 신용장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의 수정·변경의 제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 승락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소구의무가 없는 경우)

매도인은 아래 제 5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환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 받은 매수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소구의무가 있는 경우)

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
화환어음을 환매할 의무를 부담한다.

- (1) 제 3 조에 따른 매도인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한 때.
- (2)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환어음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(인수전 화환어음
매수의 경우).
- (3) 매도인이 수입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화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된
경우.
- (4)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, 수사기관의 명령, 기타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
신용장 개설은행, 기타 화환어음 지급의무자가 화환어음을 지급하는 것이
금지된 경우.
- (5) 당행에 의해 포페이팅되는 신용장에 대하여 귀사가 신용장에 명시된
조건(품질, 목적, 명세)에 맞게 매도인 또는 수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
아니함으로 인해 개설은행의 인수 이후에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를
하였을 경우.

제 6 조 (소구의무와 함께 이행할 기타의무)

- (1) 제 5 조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환매대금은 화환어음의
액면금액으로 한다.

(2) 제 5 조의 경우 매도인은 제(1)항의 환매대금에 대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제 5 조의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**당사자들이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기타 서면의 방법으로 합의한¹ 연체이자율**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.

제 7 조 (지점)

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수인의 다른 지점인 경우 대한민국 밖에 소재한 매수인의 지점은 본 계약상의 목적 상 별개의 은행으로 본다.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 5 조 및 제 6 조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데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

제 8 조 (약정의 유효기간)

- (1) 본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.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만료일 30 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최고하여야 하며, 매도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(2) 본 약정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서면합의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.

¹ 주: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신거래 약정서나 기타 서면의 방법으로 미리 연체이자율을 합의해 놓아야 합니다.

제 9 조 (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, 외국환거래 약정서 등)

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 및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적용한다.

제 10 조 (준거법 및 관할)

- (1)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한다.
- (2)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.

약정일: 년 월 일